

## 부동산경매예납금 계산기준표

- 가. **매각수수료계산방식**{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,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(재민 79-5) 제3조 제1항}
  -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까지 : 5,000원
  -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 초과~1,000만원까지 : (경매신청서 표시채권 -10만원)÷100,000×2,000+5,000원
  -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,000만원 초과~5,000만원까지 : (경매신청서 표시채권 -1.000만원)÷100.000×1.500+203.000원
  -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,000만원 초과~1억 원까지 : (경매신청서 표시채권 -5.000만원)÷100.000×1.000+803.000원
  -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억 원 초과~3억 원까지 : (경매신청서 표시채권 -1억 원)÷100.000×500+1.303.000원
  -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3억 원 초과~5억 원까지 : (경매신청서 표시채권 -3억 원)÷100,000×300+2,303,000원
  -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억 원 초과~10억 원까지 : (경매신청서 표시채권 -5억 원)÷100,000×200+2,903,000원
  -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억 원 초과 : 3,903,000원
  - ※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함.
- 나. **감정료 계산방식**{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31조, 제35조, 제34조}
  - 기본감정료: 감정가액(임료,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)에 따라『감정평 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』(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 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3조 제3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) 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%[다만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

한 법률 | 제2조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70%]를 곱한 금액

- 동일한 감정명령에 의한 시가 등의 총감정료가 240,000원 미만인 때<sup>▶</sup>, 240,000원으로 하고, 6,000,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6,000,000원으로 함.
- ㅇ 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.
  - 1. 감정가액이 2억원까지는 1인 2회
  - 2. 감정가액이 2억원초과는 2인 2회
- 다. **현황조사 수수료**(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, 제3조 제1항, 제22조 및 법원공 무원여비규칙 제13조 별표1)
  - 5만원까지 : 2,000원+여비 등 비용
  - 10만원까지 : 2,500원+여비 등 비용
  - 25만원까지 : 4,000원+여비 등 비용
  - ㅇ 50만원까지 : 6,000원+여비 등 비용
  - ㅇ 75만원까지 : 8,000원+여비 등 비용
  - 100만원까지 : 10,000원 + 여비 등 비용
  - 300만원까지 : 20,000원+여비 등 비용
  - 500만원까지 : 30,000원 + 여비 등 비용
  - 500만원 초과 : 40.000원+여비 등 비용
- 라. 신문공고료 산출방식(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, 제8조)
  - ㅇ 기본(2필지까지) : 200,000원
  - 추가(2필지 초과되는 경우임): 1필지당 100,000원 추가
- 마. 유찰수수료{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,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 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(재민 79-5) 제3조 제2항} : 5,000원(1,000원×5 회)
- 바. **송달료계산** : (이해관계인 수+3)×3,720원×10회분{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, 재판예규 제1453호}

사. 등록면허세 : 가액×2/1,000(부동산소재지 구청납부,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공 지방교육세 : 등록세액의 20/100(부동산소재지 구청납부, 지방세법 제151 시청소 제

아. **인 지** : 5,000원(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1호)

자. **중 지** : 3,000원(1필지당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